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구로제2선거구 출신 이호대 의원입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39호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,
장·단기간 불가피한 결석 등으로 인해
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원격교육과 순회교육 형태의
특수교육을 조례상에 명문화함으로써
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.
- 이에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
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원격수업과
순회교육 실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헌법과 법률,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 규범과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종 법령과 이에 기반을 둔 제도를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는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-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등교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순회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-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중심의 교육이 보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시행되는 원격교육과 순회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장애 유형과 개인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.

- 이를 통해 원격교육과 순회교육의 시행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와 교실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히 특수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